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백종헌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006

발의연월일: 2024. 8. 20.

발 의 자: 백종헌·서천호·박정하

정희용 • 이헌승 • 박충권

김예지 · 김용태 · 김종양

김상욱 • 박준태 • 강대식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하여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"보험료부과점수"를 기준으로 농어업인의 건강보험료를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「국민건강보험법」 개정안이 통과되어 지역가입자의 건강 보험료 산정방식이 소득 및 재산을 합산하여 점수화하는 방식에서 재 산만 점수화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"보험료부과점수"라는 용어가 삭제 되었음.

이에 이를 인용하고 있는 현행법에도 이를 반영하여 정비하려는 것임(안 제27조제1항 및 제28조).

법률 제 호

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7조제1항 전단 중 "같은 법 제72조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에 따라"를 "농어업인의 소득, 재산, 월별 보험료액 등을 고려하여"로 한다. 제28조의 제목 "(부과표준소득의 산정에 관한 특례)"를 "(농어업인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 관한 특례)"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"제69조의제5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"를 "제69조제5항제2호에 따른 재산보험료부과점수"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"농어업인의 재산에 적용할 보험료부과점수"를 "농어업인의 재산에 달리 적용할 재산보험료부과점수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혂 개 정 안 했 제27조(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 제27조(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 른 보험료 지원) ① 국가는 농 른 보험료 지원) ① ------어업인이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69조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 는 보험료를 같은 법 제72조에 ----- 농어업인의 소득, 재 따른 보험료부과점수에 따라 산, 부과되는 월별보험료액 등 예산의 범위에서 차등하여 지 을 고려하여 -----원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지 원금액과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7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경감 되는 금액을 합친 금액은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50 이 내여야 한다. ② (생략) ② (현행과 같음) 제28조(부과표준소득의 산정에 제28조(농어업인의 재산보험료부 관한 특례) ① 국민건강보험공 과점수 산정에 관한 특례) ① 단(이하 "공단"이라 한다)은 농 어업인에 대하여 「국민건강보 험법」 제69조제5항에 따른 보 ----제69조제5항제 험료부과점수를 산정하는 경우 2호에 따른 재산보험료부과점 같은 법 제72조제1항에도 불구 하고 휴경 · 폐경지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인의 재

산에	대해서는 다른 재산과	달
리 적	용할 수 있다.	

② 제1항에 따라 <u>농어업인의</u>
<u>재산에 적용할 보험료부과점수</u>
의 산정방법 및 기준 등에 관
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
으로 정한다.

2 -			<u>농</u>	어업인의	재
<u>산에</u>	달리	적용	-할	재산보험	험료
부과?	점 <u>수</u>				